

무배당 에이스 종합운전자상해보험2404

상품요약서

1. 문답식 상품해설

- Q) 보험가입 시 보험나이의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A)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만 나이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 Q) 해약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Q) 가입이 제한되는 사항은?
A) 이 상품은 운전자위험, 상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Q) 교통상해란 무엇입니까?
A) 교통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운전중 교통사고, 탑승중 교통사고, 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Q)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까?
A) 계약체결시점에서 2년 10개월 동안 무사고인 경우 3년이 되는 시점부터 보험료를 10% 할인하여 드립니다.
- Q) 해약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 (1) 가입자격제한
- ① 가입대상: 자가용운전자, 영업용운전자 및 비운전자
 - ② 가입연령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기본계약] • 교통사고부상치료비(1~7급)보장 • 상해응급실내원비용(응급) 보장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보장(1일이상 180일한도) [선택특약]	20년	20년	20~65세	월납, 연납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 교통상해 후유장애(3~100%)보장 특별약관 • 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애보장 특별약관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애 가족생활자금 특별약관 •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 상해 후유장애(3~100%)보장 특별약관 • 상해80%이상후유장애보장 특별약관 • 상해80%이상후유장애 가족생활자금 특별약관 • 교통사고부상치료비 II 특별약관 • 교통사고부상치료비 I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V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III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IV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III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별금보장(스쿨존 3천만원) 특별약관 • 스쿨존 자동차사고별금보장(2천만원 초과, 1천만원한도)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별금보장(대물) 특별약관 • 보복운전 피해(인적/물적)보장 특별약관 • 보복운전 피해보장 특별약관 • 면허정지보장 특별약관 • 면허취소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보장(4일이상 180일한도)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 제외, 4일이상 180일한도) 특별약관 • 교통상해입원일당보장(4일이상 180일한도) 특별약관 • 질병응급실내원비용(응급)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 입원일당(1~7급, 4일이상 180일한도) 특별약관 •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 • 상해흉터복원수술비보장 특별약관 • 교통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 •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 골절진단비II(치아파절포함, 동일사고당 1회한) 특별약관 •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 • 깁스치료비(동일사고 또는 질병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 • 신깁스치료비(동일사고 또는 질병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 • 화상진단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 • 화상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 • 중대한화상 및 부식 진단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 진단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인공관절치환수술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 척추골절진단비(동일사고당 1회한) 특별약관 • 척추상해수술비(관혈/비관혈)(연간1회한,동일사고당1회지급) 특별약관 • 추간판탈출증수술비 특별약관 •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특별약관 • 관절증(영등,무릎)수술비(이차성 및 상세불명 제외) 특별약관 	20년	20년	20~65세	월납,연납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상붕합술(안면/경부)(1일1회, 연간3회한, 급여)보장 특별약관 • 창상붕합술(안면/경부 외)(1일1회, 연간3회한, 급여)보장 특별약관 • 중증외상치료비(권역외상센터) 특별약관 •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 진단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자전거탑승중 상해사망보장 특약약관 • 자전거탑승중 상해80%이상 후유장애보장 특별약관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보장 특별약관 • 자전거사고 벌금보장 특별약관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특별약관 •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특별약관 • 20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특별약관 •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 보이스피싱손해보장 특별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갱신형) 	[최초계약 및 2~6회차 갱신계약] 3년, [7회차 갱신계약] 2년	[최초계약 및 2~6회차 갱신계약] 3년, [7회차 갱신계약] 2년	[최초계약] 20~65세 [갱신계약] 23~83세	

③ 가입제한사항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상품의 특이사항

- ① 적용이율 : 2.0%(연복리)
- ② 갱신운영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아래 선택특약은 갱신형으로 운영되며,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최대보장 기간	갱신구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갱신형)	90세	최초계약	3년만기	전기납
		갱신계약	2~3년만기	전기납

- 회사는 갱신전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갱신대상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특약을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자동 갱신됩니다.
- 갱신특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 갱신탁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 ③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거나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합니다.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사유 발생시 회사가 정하는 지침에 따라 피보험자 및 보험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④ 순수보장성 상품으로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3.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사고부상치료비(1~7급)보장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상해응급실내원비용(응급)보장	상해로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보장 (1일이상180일한도)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180일한도)
교통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보장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보장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 장해시	보험가입금액(최초 1회한)
교통상해80% 이상후유장해 가족생활자금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을 5년간 사고발생 해당일에 매월 확정지급	보험가입금액 × 60회(최초 1회한)
상해사망보장	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상해 후유장해 (3~100%)보장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장	상해로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최초 1회한)
상해80%이상 후유장해 가족생활자금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을 5년간 사고발생 해당일에 매월 확정지급	보험가입금액 × 60회(최초 1회한)
교통사고부상 치료비보장 II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보험가입금액 및 부상등급에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따라 차등지급 ²⁾	
교통사고부상 치료비보장 I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및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²⁾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Ⅳ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 ¹⁾ 를 사망하게 한 경우	2억원 한도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피해자 ¹⁾ 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시	28일 미만 진단시	300만원 한도
		28일~41일 진단시	1,000만원 한도
		42일~69일 진단시	2,000만원 한도
		70일~193일 진단시	8,000만원 한도
		140일~209일 진단시	1억원 한도
		210일 이상 진단시	2억원 한도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 ¹⁾ 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억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Ⅲ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 ¹⁾ 를 사망하게 한 경우	1억원 한도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피해자 ¹⁾ 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시	42일~69일 진단시	1,000만원 한도
		70일~139일 진단시	5,000만원 한도
		140일 이상 진단시	1억원 한도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 ¹⁾ 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억원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보장Ⅳ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사망하게 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1사고당)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5,000만원 한도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된 경우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1사고당)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5,000만원 한도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된 경우	5,000만원 한도
	상기 이외 (단,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 및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된 경우는 제외)(1사고당)		3,0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보장Ⅲ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하여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벌금보장(스쿨존 3천만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받은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뤄진 경우를 포함)		2,000만원 한도 (1사고당)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적용 받는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스쿨존 자동차사고별금보장 (2천만원 초과, 1천만원 한도)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확정판결 받은 벌금액 중 2천만원 초과 금액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뤄진 경우를 포함)	1,0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동차사고별금보장(대물)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뤄진 경우를 포함)	500만원 한도 (1사고당)	
보복운전 피해(인적/물적)보장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속물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복운전 피해보장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면허정지보장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면허정지기간 (60일 한도)	
면허취소보장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상해입원일당보장 (4일이상 180일한도)	상해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 (요양병원 제외, 4일이상 180일한도)	상해로 4일이상 계속 입원(요양병원제외)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해당 보장 보험가입금액 (4일이상 180일한도)	
	상해로 4일이상 계속 입원(요양병원제외)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 사용 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	4일째 사용일부터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해당 보장 보험가입금액(4일이상 180일한도)
		간병인 사용 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	4일째 사용일부터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해당 보장 보험가입금액(4일이상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180일한도)
	상해로 4일이상 계속 입원(요양병원제외)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4일째 사용일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해당 보장 보험가입금액 (4일이상 180일한도)
교통상해입원일당보장 (4일이상180일한도)	교통상해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180일한도)
질병응급실내원비용(응급)	질병으로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자동차사고 입원일당 (1~7급, 4일이상 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7급)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180일한도)
상해수술비보장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보장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중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상해흉터복원수술비보장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사고일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단, 사고당 500만원 한도)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 하지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교통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 보장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수술 1회당)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최초1회한)보장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포함, 동일사고당 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포함)로 진단 확정시		골절(치아파절 포함, 지급률별)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 보험가입금액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깁스치료비보장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비를 받았을 경우 지급(단, 부목치료는 제외)		보험가입금액
신깁스치료비보장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신깁스치료비를 받았을 경우 지급(단, 부목치료는 제외)		신깁스치료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 보험가입금액
화상진단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화상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중대한화상 및 부식 진단비(최초1회한)보장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중대한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최초 1회한)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 진단비(연간1회한)보장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연간 1회한)
인공관절치환수술비(연간1회한)보장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로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연간 1회한)
척추골절진단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척추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척추상해수술비(관혈/비관혈)(연간1회한,동일사고당1회지급)보장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인해 척추상해로 진단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관혈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비관혈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추간판탈출증수술비 보장	보험기간 중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급여,연간1회한)보장	보험기간 중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급여)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관절증(엉덩,무릎)수술비(이차성 및 상세불명 제외) 보장	보험기간 중에 관절증(엉덩,무릎)으로 진단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창상봉합술(안면/경부) (1일1회, 연간3회한, 급여)보장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A형)을 받은 경우	해당 보험가입금액 (1일1회, 연간3회한)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B형)을 받은 경우	해당 보험가입금액 (1일1회, 연간3회한)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C형)을 받은 경우	해당 보험가입금액 (1일1회, 연간3회한)
창상봉합술(안면/경부 외) (1일1회, 연간3회한, 급여)보장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 외)(A형)을 받은 경우	해당 보험가입금액 (1일1회, 연간3회한)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 외)(B형)을 받은 경우	해당 보험가입금액 (1일1회, 연간3회한)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 외)(C형)을 받은 경우	해당 보험가입금액 (1일1회, 연간3회한)
중증외상치료비(권역외상센터) 보장	보험기간 중에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하여 '중증외상환자'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 진단비(연간1회한)보장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자전거탑승중 상해사망보장	자전거 탑승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1천만원
자전거탑승중 상해80%이상 후유장애보장	자전거 탑승 중 상해로 80%이상 후유장애 진단시	1천만원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보장	자전거 운전 중 자전거사고로 피해자 ¹⁾ 를 사망하게 한 경우	3천만원 한도	
	자전거 운전 중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피해자 ¹⁾ 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시	42일~69일 진단시	1천만원 한도
		70일~139일 진단시	2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 진단시	3천만원 한도
	자전거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 ¹⁾ 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천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벌금보장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액 확정 시(1사고당)	2천만원 한도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2만원)	피보험주택에서 사용하는 6대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한도내 실제수리비용 보상 (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2만원)	피보험주택에서 사용하는 12대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청소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한도내 실제수리비용 보상 (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20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2만원)	피보험주택에서 사용하는 20대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청소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전기밥솥, 정수기,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오븐,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전기레인지)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한도내 실제수리비용 보상 (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사1심 합의/단독사건과 민사 소액/항소/상고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우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보이스피싱손해보장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장(갱신형)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주1) 피해자인 타인의 경우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주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및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지급금액 예시

부상등급	지급보험금		
	보험가입금액 600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기준
1급	6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2~4급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5급	150만원	250만원	500만원
6급	80만원	150만원	300만원
7급	40만원	60만원	120만원
8급~11급	20만원	30만원	60만원
12급~14급	10만원	10만원	20만원

(2)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③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Ⅲ,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Ⅴ,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Ⅲ,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Ⅳ, 자동차사고별금보장(스쿨존 3천만원), 스쿨존 자동차사고별금보장(2천만원 초과, 1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별금보장(대물),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보장, 자전거사고 별금보장,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20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보이스피싱손해보장,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장을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됩니다.
- ④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 산출기초

(1)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2) 적용이율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0%입니다.

【적용이율이란?】 :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 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을 “보험료적립금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적립금적용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보험료적립금적용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3) 적용위험률

【적용위험률이란?】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보장위험(남/녀 40세 기준, 상해 1급, 자가용)	적용위험률	
	남자	여자
기본계약 교통사고부상치료비(1-7급)보장	0.000241	0.000128
기본계약 상해응급실내원비용(응급)보장	0.071333	0.044436
기본계약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보장(1일이상 180일한도)	0.083579	0.088325

(4)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5. 보험가격지수

보험가격지수 산출식 : “영업보험료 ÷ (참조순보험료+상품군별 평균사업비) × 100”

<40세, 자가용, 상해 1급, 20년 만기, 전기납>

보험가격지수(남자/여자)(%)
140.3% / 149.6%

주) 무심사보험, 간편심사보험 및 유병자보험 등 비표준체 대상 상품의 경우 표준체 상품 대비 보험가격지수가 높을 수 있음

【보험가격지수란?】 :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로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6.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7.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자가용, 남자40세, 20년만기 20년납, 월납 19,550원 기본계약(교통사고부상치료비보장(1~7급))	2,000만원
○ 기본계약 :	기본계약(상해응급실내인비용(응급)) 기본계약(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보장(1일이상 180일한도))	20만원 50만원
○ 선택특약 :	교통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교통사고차리지원금보장V 특별약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IV 특별약관 교통사고부상치료비보장II 특별약관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가족생활자금특별약관	1억원 2억원 5,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원)	해약환급금(원)	해약환급률(%)
1년	234,600	-	0.0
3년	703,800	-	0.0
5년	1,173,000	227	0.0
7년	1,642,200	21,478	1.3
10년	2,346,000	24,806	1.1
15년	3,519,000	19,082	0.5
17년	3,988,200	13,327	0.3
20년	4,692,000	-	0.0

(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등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